

# 심 의 의 결 서

○ '23년 제12차 건축위원회 : 2023. 12. 27.(수)

심의번호	2023 - 12 - 1 (총무로2가 62-5 외 1필지)	심의결과	재심 의결
심의내용	-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심의 -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심의		
<p><b>&lt; 의결 내용 &gt;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재료 색채 및 매스 구성 등 주변 건축물과 조화롭게 입면성 및 조형성을 보완하여 도시 이미지에 어울리게 재계획할 것</li> <li>2. 전면부 기둥 위치 조정 등을 하여 객실(1, 4) 평면계획을 개선할 것</li> <li>3. 아래와 같이 평면계획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므로 평면 재계획할 것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매점 및 호텔 용도는 물품(소매점 물품 및 침구류 등) 이동 작업이 많은 용도임으로 지상 1층에 하역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 주출입구에서 홀로 연결되는 통로 계획은 평면 및 동선 계획상 불합리하므로 재계획할 것</li> <li>- 지상 2층 보이드 계획은 호텔 로비(카운터)로서의 기능 저하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계획이므로 호텔 로비는 최상층으로 계획하고 지상 2층 보이드 공간은 삭제하여 근린생활시설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재계획할 것</li> </ul> </li> <li>4. 지하층 층고 높이는 실제 사용 시 불합리(소방스프링쿨러, 우오수 배관 등)한 계획이므로 층수 조정(지하 3층 → 지하 2층으로 변경) 또는 굴착 깊이를 조정하여 충분한 층고 높이를 확보토록 계획할 것</li> <li>5. 지하층 피난계단 2개소는 계단 규정을 검토하여 계획할 것</li> <li>6. 옥상 조경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재계획할 것(휴게공간 구성할 것)</li> <li>7.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전층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므로 승강기 운영계획을 제출할 것</li> <li>8. 지상 2층에 창고(린넨실)는 위치 조정 등을 통하여 고객과 직원 동선이 분리가 되도록 계획할 것</li> <li>9. 지상 3 ~ 7층 발코니 부분은 면적에 산입하는 것을 검토할 것(권장)</li> <li>10. 지상 8층 화장실 위치를 서측으로 이동하여 사무공간 개방감을 확보할 것(권장)</li> </ol> <p>→ 뒷면 계속</p>			

< 의결 내용 >

11. 지상 1층 부출입구 옆 비상탈출구 및 지붕층 옥상계단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계획할 것
12. 소방관 진입창에 비산방지 필름을 부착할 것
13.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고 드렌처 설비는 지상 전층 설치할 것
14. 지상 2층 방화셔터의 폭은 KSF 4510(중량셔터)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
15. 내부 칸막이(조적) 하중을 반영한 구조 계획할 것

※ 기타 안내사항

- 본 심의에서는 관련법규 검토를 제외하였으며, 따라서 건축심의와 인·허가와는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.

# 심 의 의 결 서

○ '23년 제12차 건축위원회 : 2023. 12. 27.(수)

심의번호	2023 - 12 - 2 (남대문로5가 178)	심의결과	재심 의결
심의내용	-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심의 -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심의		
<p><b>&lt; 의결 내용 &gt;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건축한계선(2m)으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완화 받은 바, 건축한계선에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를 재검토할 것</li> <li>2. 주요 디자인 개념이 도시 이미지에 적합하도록 외장재 및 개구부 크기 조정 등을 보완하여 입면성 및 조형성 등 건물 디자인을 향상시킬 것</li> <li>3. 지상 2층 ~ 4층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·복도는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킬 것</li> <li>4. 숙박시설 A-TYPE은 복도를 이용하여 객실 출입 가능하도록 전실 위치 변경할 것</li> <li>5.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냉장·냉동고는 내부에서 사용 가능토록 계획할 것</li> <li>6. 지하층 ~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은 사용성을 고려하여 내부용 덤웨이터 설치를 검토할 것</li> <li>7. 옥상 엘리베이터 승강기실 설치 시 건축물 높이에 산입되므로 높이 규정 재검토하여 계획할 것</li> <li>8. 기준층의 계단실 벽체는 재료 변경(방화유리) 등을 검토하여 복도·홀의 채광·환기가 가능하도록 재계획할 것</li> <li>9.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에서 전면부 지하층 계단은 후면부로 위치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</li> <li>10. 옥상 조경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재계획할 것(휴게공간 구성할 것)</li> <li>11. 지상 1 ~ 2층 상가의 하부 바닥재(아래층 천장)는 준불연재로 계획할 것</li> <li>12. 소방관 진입창에 비산방지 필름을 부착할 것</li> <li>13. 개구부가 설치되는 부분(실외기실 포함)에는 드렌처를 설치할 것</li> <li>14. 내부 칸막이(조적) 하중을 반영한 구조 계획할 것</li> <li>15. SD500 철근은 D22 이상 철근에 적용할 것(권장)</li> </ol> <p>※ 기타 안내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본 심의에서는 관련법규 검토를 제외하였으며, 따라서 건축심의와 인·허가와는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.</li> </ul>			

# 심 의 의 결 서

○ '23년 제12차 건축위원회 : 2023. 12. 27.(수)

심의번호	2023 - 12 - 3 (쌍림동 261-2 외 1필지)	심의결과	<b>조건부 의결</b>
심의내용	-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심의 -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심의 - 기계식주차장 10대 이상 설치하는 건축물에 관한 심의		
<p><b>&lt; 의결내용 &gt;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일조 사선으로 인해 생기는 경사형 테라스 부분은 일부를 분절시키거나 디자인을 특화하여 입면성을 향상시킬 것</li> <li>2. 지상 1층 외부 측의 계단은 추후 지하층 용도 및 사용성을 고려하여 선큰으로 계획하는 것을 검토할 것(권장)</li> <li>3. 우측면 담장은 영롱쌓기 등으로 계획하여 개방감을 확보할 것</li> <li>4. 지하 1 ~ 2층은 창고시설임을 감안하여 하역공간 확보를 위한 장애인주차 위치 조정 등을 검토할 것</li> <li>5. 기계식주차장 위치는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검토할 것(권장)</li> <li>6. 간이 완강기는 완강기로 변경하여 계획하고 지상 3 ~ 6층에 설치할 것</li> <li>7. 지붕층 계단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계획할 것</li> <li>8. 소방관 진입창에 비산방지 필름을 부착할 것</li> <li>9. X4열 기둥 대신 X<sup>1</sup>열에 기둥 배치를 고려할 것</li> <li>10. X<sup>3</sup> ~ X<sup>4</sup>열 구간 구조 계획 재검토할 것</li> <li>11. 전이보는 전단내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정보 단면을 확보하고 허가 시(실시도면) 부재길이 방향 배근 상세도를 제출할 것</li> </ol> <p>※ 기타 안내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본 심의에서는 관련법규 검토를 제외하였으며, 따라서 건축심의와 인·허가와는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.</li> </ul>			

# 심 의 의 결 서

○ '23년 제12차 건축위원회 : 2023. 12. 27.(수)

심의번호	2023 - 12 - 4 (회현동1가 106-2)	심의결과	조건부 의결
심의내용	- 총수완화 심의		
<p>&lt; 의결 내용 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지상 1층 101호는 입주자들을 위한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커뮤니티실로 계획할 것 (5세대 → 4세대로 변경)</li><li>2. 지상 1층 계단벽은 내화구조로 설치할 것</li><li>3. 지상 1층 필로티 천장의 단열재는 준불연재 이상의 재료로 설치할 것(화재안전성 확보)</li><li>4. 소방관 진입창에 비산방지 필름을 부착할 것</li><li>5. 옥탑층 출입문 방향은 피난방향으로 계획할 것</li><li>6. 자동화재탐지기설비 및 유도등을 설치할 것</li></ol>			
<p>※ 기타 안내사항</p> <p>- 본 심의에서는 관련법규 검토를 제외하였으며, 따라서 건축심의와 인·허가와는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.</p>			